

수용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.

<P>조선시가지계획령(폐)에 의거한 기업자인 부산시가 수용목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친 바 없이 한 가격결정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.</P> <P>(대법원 1965.04.06. 선고 64누169 판결)</P>